

직장 내 성희롱예방 의무교육

□ 법률 근거

「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」제13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 1회(1시간)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 이행 시 동법 39조3항에 의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「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」

제13조 ②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 ①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1.14>

[시행 2012.9.2] [법률 제11461호, 2012.6.1, 타법개정]

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

-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"성희롱 예방 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 ①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1.14>
- ③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·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12.8.2] [대통령령 제23946호, 2012.7.10, 일부개정]

제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

-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 2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 3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 4.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◆ 교육방법

교육방법은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·조회·회의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 [시행령 제2장 제3조 ③항]